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247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2474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합1031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최홍국

변론 종결2021. 7. 15.

판결 선고2021. 8. 19.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합1031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 중 337,500,000원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주식회사 D가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 금제540호로 공탁한 888,290,950원 중 337,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관)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 3면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C은 2017. 11. 21. 피고에게 C이 D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37,5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인 위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일인 2017. 11. 21.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시가 2,255,344,250원 상당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와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888,290,950원, H에 대한 채권 986,423,600원, I에 대한 채권 1,397,981,200원(I가 공탁한 1, 2, 3차 공탁금의 합계)이 있어 합계 5,528,0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는 I의 1차 공탁금 888,290,950원만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가 세 차례에 나누어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던 설비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극재산으로는 위 토지 등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비롯하여 9,240,442,599원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10,352,189,40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H에 대한 채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이 H과 계약한 설비공급대금은 합계

1,605,000,000원이므로 위 채권액을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C과 H 사이에 위 채권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2017. 12. 7.자 합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적극재산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H과의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합계 1,605,000,000원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7, 33, 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이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H과의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2017. 12. 7.자 계약변경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H은 2018. 2. 1.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146호로 위 계약변경합의에 따른 설비대금채무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986,423,600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위 대금 감액 경위에 관하여 C의 대표이사 J는 C이 설비공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공급분이 삭감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약변경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2017. 11. 21.)로부터 불과 16일 이후인 점, 비록 위 대금 감액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시운전 미완료 등 C의 설비공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당시 C 스스로도 설비공급계약상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7. 11. 21. 당시 계약서상의 금액 전부를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는 위 계약변경합의는 C의 부도 후 H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변경합의를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경합의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H이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986,423,6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I에 대한 채권

피고는, C이 I와 2014. 3. 31.부터 2017. 11. 13.까지 다수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I에 대한 채권은 총 5,463,555,2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위 금액 전부가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 제20 내지 32호증,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가 2014. 3. 31.부터 2017. 11. 13.까지 C과 사이에 다수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급대금의 합계액이 7,419,669,000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이 위 채권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기타 적극재산에 관한 주장

피고는, C의 수원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보유차량(봉고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 소형차 2대) 가액 약 4,000만 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다양한 특허권(무형재산)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채권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잔존가치가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K(2011년), L(2012년), M(2014년)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특허권 등의 구체적인 평가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C의 적극재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양도받은 채권이 C의 적극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피고가 수차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여 위 채권양도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저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미 그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채권자들이 C이 I, D, H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 채권양도 등을 이유로 각자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는 상황이었던 점, 결국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7. 11. 22.경 부도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전체적인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부도에 이르기 훨씬 이전부터 2016. 12. 29.경 공급한 물품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기존 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C의 부도는 일시적으로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그 재무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7,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방법

C과 피고 사이에 2017. 11. 21.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한 경우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겨 제3채무자가 면책되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 이 사건 공탁금 중 337,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관)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원종찬

판사이혜란

별지